

2020. 3 제 156호 (20-01)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 참여

임 혜 경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 경기도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2. 개정 공직선거법과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
3. 지역구 선거의 여성후보자 경쟁력
4. 시사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분석」제156호(20-01)

발행인 정 정 옥

발행일 2020년 3월 5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79

인 쇄 디자인펌킨 031)893-8316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음.

※「이슈분석」은 가족여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gfwri.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22)

요 약

-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정수는 20대 총선과 동일한 300석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준연동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준연동형’ 방식은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연동하는 것이며, ‘준연동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동비율을 50%만 적용하여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는 의미임.
- 개정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하여 여성의원의 직접 증가 효과는 없으나, ‘여성주의 정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진출 등 여성 정치 참여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여성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 지역구 여성할당을 요구하였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에 여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음. 비례대표의 경우 20대 총선과 의석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의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
 - 한편 한 정당이 3% 이상만 득표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여성주의 정당’ 및 진보정당의 진출에 도움이 됨. 진보적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현실화하여 정치적 이슈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정당 창당이 진행되고 있음.
- 16대-20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지역 입후보자 1,0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입후보자의 당락에 성별이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각 정당은 지역구를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야 하며, 30% 여성할당제도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적인 여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권고하는 여성할당 30%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 변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치루는 21대 총선에서 경기지역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국회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목 차

1. 경기도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1
가. 국회의원 여성참여 현황	1
나. 경기도 지역구 여성의원	3
2.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	6
가. 개정 공직선거법	6
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7
다. 선거제도가 가져올 여성정치의 변화	9
3. 지역구 선거의 여성후보자 경쟁력	13
가. 16-20대 지역구선거 후보자의 성별경쟁력 분석	13
나.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여성할당 기준	16
4. 시사점	18
가. 요약	18
나. 시사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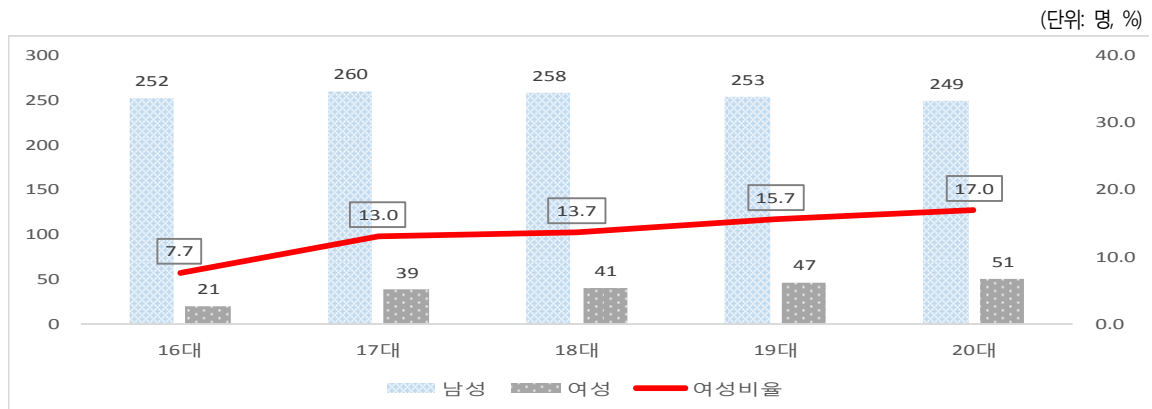
1. 경기도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 국회 여성비율은 비례대표 53.2%, 지역구 10.3%이며, 전체 의석의 84.3%를 구성하는 지역구의 경우 여성 대표성이 임계치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대 총선 결과 60개 선거구 중에서 7명이 여성으로 선출되어 여성비율은 11.7%임”

가. 국회의원 여성참여 현황

-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은 총 51명으로 전체의원의 17.0%이며(20대 총선 기준), 2000년(16대 총선)과 비교하면 7.7%에서 17.0%로 9.3%p 증가하였음(<그림1>, <표1> 참조).
- 여성의원 비율은 16대 국회 7.7%, 17대 국회 13.0%,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 20대 국회 17.0%로 선거시기마다 평균 2.3%p 증가하였음.

<그림 1> 국회의원 여성비율(2000-20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 1> 국회의원 여성비율(2000-2016)

총선차수(연도)	합계	여성비율			증감율
		남성	여성	여성비율	
16대(2000년)	273	252	21	7.7	-
17대(2004년)	299	260	39	13.0	5.3
18대(2008년)	299	258	41	13.7	0.7
19대(2012년)	300	253	47	15.7	2.0
20대(2016년)	300	249	51	17.0	1.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며, 20대 총선 기준 비례대표 여성비율은 53.2%이고 지역구 여성비율은 10.3%임.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항에 따라 여성할당 50%가 제도화 된 반면, 지역구 선거는 여성 30% 할당이 권고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진입이 더딘 상황임.

- 공직선거법 제46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에서 ③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¹⁾. 반면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관한 ④항은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²⁾.
-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 50% 할당의 효과로 2000년 34.8%에서 2004년 51.8%, 2008년 50.0%, 2012년 51.9%, 2016년 53.3%로 증가하였음. 그렇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여성참여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은 2000년 2.2%, 2004년 4.1%, 2008년 5.7%, 2012년 7.7%로 한자리 수에 머물렀으며, 2016년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인 10.3%에 진입하였지만 임계치(critical mass)인 3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상 <표 2> 참조).

<표 2> 국회 비례대표 및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2000-2016)

(단위: 명, %)

구분	전체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여성	여성 비율	여성	여성 비율				
16대(2000년)	273	21	7.7	46	16	34.8	227	5	2.2
17대(2004년)	299	39	13.0	56	29	51.8	243	10	4.1
18대(2008년)	299	41	13.7	54	27	50.0	245	14	5.7
19대(2012년)	300	47	15.7	54	28	51.9	246	19	7.7
20대(2016년)	300	51	17.0	47	25	53.2	253	26	10.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1)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84.3%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5.6%임.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증대되려면 여성할당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또는 지역구 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할당을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

나. 경기도 지역구 여성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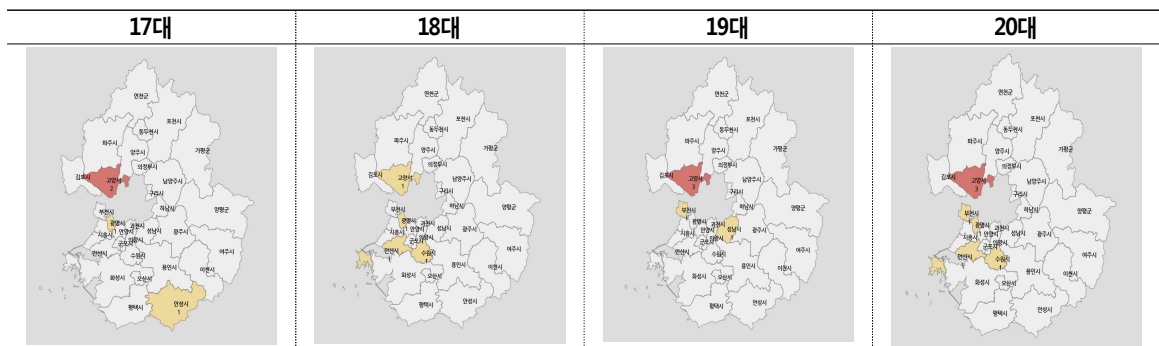
- 20대 총선 기준, 경기도의 여성의원은 총 7명으로 전체 60명의 11.7%를 구성하고 있음. 전국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지만 큰 차이는 없음.
 - 16대 총선(2000년) 당시 경기도의 여성의원은 없었으며, 2004년 4명(경기 8.2%, 전국 4.1%), 2008년 4명(경기 7.8%, 전국 5.7%), 2012년 5명(경기 11.5%, 전국 7.7%), 2016년 7명(경기 11.7%, 전국 10.3%)로 16년 동안 7명이 증가하였음(<표 3> 참조).
 - 여성국회의원이 선출된 지역은 고양시가 가장 많고, 광명, 수원, 안성, 안산, 성남, 부천 등 일부지역에서만 여성의원이 당선된 경험이 있음(<그림 2> 참조).

<표 3>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2000-2016)

총선차수(연도)	16대(2000년)	17대(2004년)	18대(2008년)	19대(2012년)	20대(2016년)
경기도 여성비율	0	8.2	7.8	11.5	11.7
여성의원수	0	4	4	6	7
지역구수	41	49	51	52	60
전국 여성비율	0	4.1	5.7	7.7	10.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림 2> 경기도 여성국회의원 분포(17대-20대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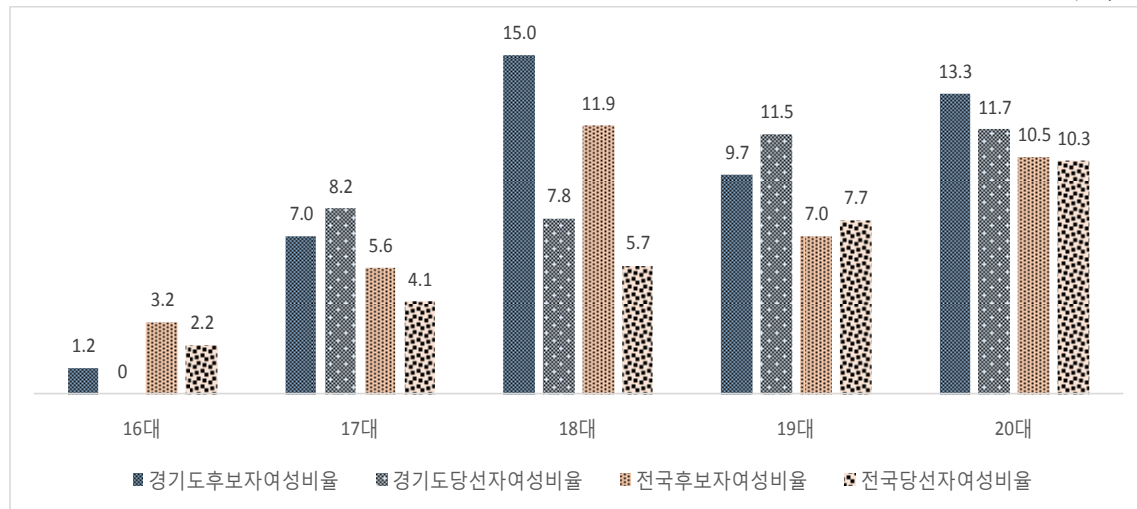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주: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함.

○ 경기도의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소폭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000년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자 비율은 1.2%에서 2016년 13.3%로 증가하였고, 여성당선자 비율은 0%에서 11.7%로 증가하였음.

-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2000년 1.2%, 2004년 7.0%, 2008년 15.0%, 2012년 9.7%, 2016년 13.3%로 증가추세이며, 당선자 여성비율도 2004년 8.2%, 2008년 7.8%, 2012년 11.5%, 2016년 11.7%로 증가했음.
- 전국의 상황도 경기도와 유사하여 후보자 여성비율은 2000년에 3.2%, 2004년 5.6%, 2008년 11.9%, 2012년 7.0%, 2016년 10.5%로 증가하는 경향이며, 당선자 여성비율도 2.2%, 4.1%, 5.7%, 7.7%, 10.3%로 증가하였음(이상 <그림 3> 참조).

<그림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및 당선자 여성비율(2000-2016)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의회 진출에 효과적인 제도로서 여성할당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을 도입한 이후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확산되고 할당제를 통해 진출한 여성의원 의정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이정진, 2019)³⁾.

- 즉, 여성할당제가 여성대표성 증대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제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녀동수 원칙이 필요함.
- 한편, 20대 총선 기준 경기도 60개 선거구의 입후보자 성별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음. 제도적으로 여성할당 30%를 권고하고 있으나 주요 정당에서는 30% 여성할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60개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28명이며,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은 여성 1명씩을 추천해 100% 여성을 공천했고, 민중연합당은 58.8%로 3개 정당이 30% 이상 여성을 공천했음. 반면, 새누리당은 8.3%, 더불어민주당은 13.3%, 국민의당 2.1%, 정의당 15.2% 선에서 여성을 공천했고, 당선자 중에서 여성비율은 새누리당 5.3%, 더불어민주당 12.5%, 정의당 100%이었음(<표 4> 참조).

<표 4> 20대 총선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여성비율

(단위: 명, %)

구분	후보자			당선인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계	211	28	13.3	60	7	11.7
새누리당	60	5	8.3	19	1	5.3
더불어민주당	60	8	13.3	40	5	12.5
국민의당	48	1	2.1	0	0	0
정의당	13	2	15.4	1	1	100.0
노동당	1	1	100.0	0	0	0
녹색당	1	1	100.0	0	0	0
민중연합당	17	10	58.8	0	0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본 분석에서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여전히 미흡한 여건에서 개정공직선거법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있을지를 분석하며, 지역구 여성공천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로 여성의 당선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함.
- 개정 공직선거법이 여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개정선거법이 가져올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함.

3) 이정진(2019).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그리고 지역구 여성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분석하여 여성을 좀 더 많이 공천하도록 하는 주장에 긍정적 논리를 제공하고자 함. 그동안 정당들이 여성공천에 소극적인 원인으로 여성후보자가 남성보다 당선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과 다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임. 만일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면 여성공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논리가 될 것임.

2. 개정 공직선거법과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

가. 개정 공직선거법

“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준연동형’ 방식으로 변화되며, 후보추천의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고,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비례대표제도를 ‘준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하며, 비례대표 추천을 위한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임(<표 5> 참조)

<표 5>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이전	개정 후
선거연령	19세	18세
국회의원정수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정당의 득표비율 기준 비례대표 의석할당	준연동 방식으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할당(연동율 50%)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비례대표 추천	민주적 추천절차를 명시하고 세부적인 조항은 없음	당헌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 위반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주: 국회의결 2020.12.27. 시행일 2020.1.14.

자료: 국회 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검색기준일. 2020.02.03.)

-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19세부터 주어진 선거권을 18세로 확대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연령이 낮아지게 되었음.
- 국회의원 정수는 개정 이전에는 300석만을 명시하였으나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선출방식에 따른 의석수를 명시하였음.
- 비례대표 선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율 50%)를 도입하고, 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정화 하고 있음.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제출 및 공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단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법 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민주적 절차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서류를 검토해 정당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함⁴⁾.

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은 정당별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에 연동하는 방식이며, ‘준연동형’은 연동비율을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함”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정당별 득표율을 지역구를 포함하는 전체 의석수에 연동하는 방식임.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준연동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동비율을 50%만 적용하여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는 의미임(하승수, 2019)⁵⁾.
 - 기존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 문제가 있었음.
 - ‘연동형’ 방식은 전체 300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을 제외한 의석수에 대해 정당의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함.

4) 제52조(등록무효)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신설조항>

5) 하승수(2019). ‘패스트트랙 위의 선거제도, 전망과 과제’. 『창작과 비평』. 47(2), 336-346.

Ⅱ 이슈분석 Ⅱ

- ‘준연동형’은 정당별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남은 의석의 절반(50%)에 대해서만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다시 병립형으로 기존과 같은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임.
 - 다만, 2020년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2020년 21대 총선에 적용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은 (1단계) 연동배분 의석수 산정, (2-1단계)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가 30석보다 적을 경우 잔여배분 의석수 산정 또는 (2-2단계) 30석을 넘을 경우 조정의석수 산정, (3단계) 17석에 대한 병립형 의석 배분 순으로 이루어짐.
- 현재의 준연동형 방식은 산출과정이 복잡하므로 <표 6>과 같이 산출식을 참고로 하여 <그림 4>의 (사례1)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음.

<표 6> 준연동형 비례대표 산출식

구분	내용	산출식
(1단계)	연동배분의석수 산정	$\text{연동 배분 의석 수} = \frac{\left[\frac{\text{국회 의원 정수} - \text{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text{의석할당 정당이 국회의원 당선인수}} \times \frac{\text{해당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text{해당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right]}{2}$
(2단계)	(2-1)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text{잔여배분 의석수} = (30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 합계}) \times \text{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2-2) 조정의석수 산정	$\text{조정 의석수} = \frac{30 \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3단계)	병립형 의석 배분	$\text{배분의석} = 17 \times \text{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이라고 명하며, 의석할당 정당은 정당득표율이 3%이상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재구성함

- <그림 4>의 (사례 1)은 지역구 당선인 총 253석 중 A당 100석, B당 80석, C당 40석, D당 30석, 무소속 3석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A당 40%, B당 30%, C당 10%, D당 20%로 가정한 후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인수를 앞 <표 6>의 산출식에 따라 가정해 본 것임.
- A당의 경우 총의석수 300석 중 무소속 3석을 제외한 297석을 기준으로 득표율 40%를 적용한 후에 지역구 100석을 뺀 후(=18.8), 그 의석의 50%(=9.4)인 9석을 연동배분의석으로 확보함. 4개 정당의

연동배분의석수가 총 30석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1석에 대해 4개 정당의 득표율대로 나누며 가장 높은 수를 얻은 A당이 1석을 가져감. 병립형 의석은 남은 1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므로 A당은 17석의 40%인 7석을 배분받게 됨. 이에 A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총 17석이 됨. 그 외 정당도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그림 4> 참조).

<그림 4>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적용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인수(사례1)

구 분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인수	100석	80석	40석	30석	3석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득표비율	40%	30%	10%	20%	-	100%
(1단계)	연동배분 의석수	9	5	0	15	-	29석
(2단계)	잔여배분 의석수	1	0	0	0	-	1석
(3단계)	병립형 의석배분	7	5	2	3	-	17석
(합계)	비례대표 당선인수	17	10	2	18	-	47

주1: A당 연동배분의석수 = [(총의석수 300석-무소속 3석)×득표율 40%-지역구 100석]÷2 = 9.4(9석)
 주2: A당 잔여배분의석수 = 잔여의석1석 × 득표율 40% = 0.4 (4개 정당 중 가장 큰 수인 A당에 1석 배분)
 주3: A당 병립형 배분의석수 = 병립형의석 17석 × 득표율 40% = 6.8(7석)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재구성함

다. 선거제도가 가져올 여성정치의 변화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의원 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없지만,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여성주의 정당’과 같은 신규 정당의 진출은 기대해 볼 수 있음”

1) ‘준연동형’ 방식의 20대 선거 소급적용: 여성의원 증가 없음.

- 2019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여성할당제 방안을 선거법 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성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음.
 -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를 통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 세가지 요구안을 발표하였음(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⁶⁾
 - 그렇지만 개정 선거법은 여성계가 요구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없이 20대 총선과 동일한 47석으로 확정되었고,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의무화 하는 제도변화도 없었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제도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준연동형’ 방식은 정당별 의석의 재분배 효과는 있지만 직접적인 여성의원 증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즉,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동일하고 여성할당 50%가 동일하므로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여성의석의 증가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 (사례 2)는 ‘준연동형’ 방식의 제도가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가져올 효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 2016년 선거결과(20대 총선)에 적용해 본 결과임. 변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본 결과 여성의원 수는 20대 총선과 동일한 25석이었음(<그림 5> 참조).
 - 지난 20대 총선에서 4개 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S당 17석, M당 13석, K당 13석, J당 4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여성의원은 25명이었음. 20대 총선 결과를 개정선거법인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여 (1단계)연동배분의석, (2단계)조정석, (3단계)병립형의석 방식으로 배분할 경우 S당 6석, M당 5석, K당 27석, J당 9석으로 정당별 의석수가 변화하게 됨.
 - 그렇지만 여성의원수는 여성할당 50%를 적용할 경우 S당 3석, M당 3석, K당 14석, J당 5석 등 총 25명의 여성의원이 선출될 수 있음.
 - 즉,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당별 배분은 변화하지만 여성의원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⁷⁾(이상 <그림 5> 참조).

6)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9).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경기 WIFI 162호, 2019.02.22.

7) 당초 발의되었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은 지역구 의석수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조정하는 법률안으로 발의되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한다면 여성의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렇

<그림 5>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적용(사례2)

20대 총선 결과	구 분		S당	M당	K당	J당	무소속	합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인수	105	110	25	2	11	253(26)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수	17	13	13	4	-	47(25)

준연동형 적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득표비율	33.5	25.5	26.7	7.23	-	100%
	(1단계)	연동배분의석수	0	0	26	9	-	35
	(2단계)	조정외석수 (30석)	0	0	22	8		30
	(3단계)	병립형 의석배분	6	5	5	1		17
	(합계)	비례대표 당선인수	6(3)	5(3)	27(14)	9(5)		47(25)

주1: 연동배분의석수 = (총의석수 300석-무소속 11석)×득표율 -지역구 당선인수]÷2
 주2: 조정외석수(연동배분의석수가 30석을 초과하여 조정외석 적용) = (30석×연동배분의석수) ÷35
 주3: 병립형의석배부 = 17석 × 정당별 득표율. 정당별 득표율의 소수점을 큰 수부터 1석씩 추가 배분함.
 주4: ()안은 여성의원수. 비례대표 여성의원수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홀수번호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가정하여 산출함.

2) 여성주의 정당의 창당

- ‘준연동형’ 방식은 정당득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간 정책 경쟁을 촉진하며, 소수 정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수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을 늘려 정치적 다양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하승수, 2019).
 - 정당의 지지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한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지만 각 당 협의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20대 총선과 동일한 47석이 되었음.

- 1인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에서 의회 진출이 어려웠던 소수정당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50%까지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가진 소수정당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의제에 집중하는 여성주의 정당의 존립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대 총선 기준으로 3% 이상만 득표해도 국회 진출이 가능하므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신규 정당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3%(약 70만표)를 득표하면 4, 5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국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주의 정당을 창당하여 의회에 진입할 수 있음(김효선, 2020)⁸⁾.
- 실제로 여성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여성주의 정당이 2020년 3월 창당하여 이번 21대 총선에 후보자를 낼 계획임.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은 ‘여성의당’이며, 2월부터 창당 준비를 시작해 2월 15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쳤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창당할 계획임.
 - ‘여성의당’은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에서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의 대의기구로 동수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여성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행동을 시작할 것’을 밝히고 있음. ‘여성의당’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수의 기득권과 남성이 향유하는 특권, 전쟁과 군사문화에 반대하는 정책을 표방할 계획임(여성신문, 2020.02.14.)⁹⁾
- 세계의 여성주의 정당으로는 스웨덴의 ‘F(Feministiskt initiative)’, 영국의 ‘여성평등당(Women’s Equality Party)’, 핀란드의 ‘여성주의당(Feministinen puolue)’, 아이슬란드의 ‘여성연맹(Women’s Alliance)’, 필리핀의 ‘가브리엘라 여성당(GABRIELA Women’s Party)’ 등이 있으며, 북유럽 지역에서 여성주의 정당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여성신문, 2017; 김효선, 2020).
 - 스웨덴의 여성주의 정당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Feminism for alla)’을 모토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함.
 - 한편, 여성당은 명확한 지지계층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대중적 보편성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당의 역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기존 정당의 여성조직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음(정미애·문경희, 2010¹⁰⁾; 홍희정·홍성현, 2015¹¹⁾).

8) 김효선(2020). “ ‘여성의 당’ 성공해야 한다” .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2020. 02.13. 31면.

9) 여성신문(2020). ‘ “남성 중심 정치에 반대합니다... ’ 여성의당 ‘15일 발기인대회 개최’ 2020.02.14.

3. 지역구 선거의 여성후보자 경쟁력

가. 16대-20대 지역구 선거 후보자의 성별 경쟁력 분석

“지난 총선에 입후보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성별 당선경쟁력 분석에서 성별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됨. 여성의 당선 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을 공천할 필요가 있음”

- 각 정당이 여성을 추천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황아란(2002), 권수현·황아란(2017)은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의 당선 경쟁력이 남성보다 뒤지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바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선입견을 바로 잡고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음을 분석한 것임(황아란, 2002¹²); 권수현·황아란, 2017)¹³ .
 - 두 연구에 의하면 성별 요인은 당선경쟁력,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며, 오히려 여성후보는 정당공천의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즉 정당 공천을 받는 여성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황아란, 2002).
 - 이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공천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며, 실제 여성할당제와 같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각 나라들이 제도의 효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에 있어 제도적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책임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권수현·황아란, 2017)
-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의 당선 경쟁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면 각 정당은 여성후보자를 적극 발굴·공천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본 분석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16대(2000년)~20대(2016년) 총선에 출마한 경기도 지역구 후보자 1012명의 자료를 활용해 당락의 영향요인을 분석함.

10) 정미애·문경희(2010).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9호.

11) 홍희정·홍성현(2015). ‘스웨덴 여성당. 공당으로의 여정: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젠더리뷰 가을호.

12) 황아란(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6(1), 203-222.

13) 권수현·황아란. (2017). “여성의 당선 경쟁력과 정당공천: 제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1(2). 69-92.

- 분석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및 당선자 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경기도 후보자는 총 1,012명이며 전체 후보 중에서 여성후보자는 9.6%인 97명이었고, 당선자는 총 253명중에서 8.3%인 21명이었음(<표 7> 참조).

<표 7> 분석대상 자료

구분	후보자			당선자		
	합계	여성(여성비율)		합계	여성(여성비율)	
16대(2000)	171	2	(1.2)	41	0	(0.0)
17대(2004)	228	16	(7.0)	49	4	(8.2)
18대(2008)	227	34	(15.0)	51	4	(7.8)
19대(2012)	175	17	(9.7)	52	6	(11.5)
20대(2016)	211	28	(13.3)	60	7	(11.7)
합계	1,012	97	(9.6)	253	21	(8.3)

- 독립변수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의 주요정당여부, 대통령소속정당여부, 성별, 학력, 연령, 현직 여부를 포함하고, 종속변수는 당선여부를 측정하였음. 종속변수가 당선 또는 탈락의 이분형 변수라는 점에서 이항 로짓 회귀 분석을 실시함.

- 주요소속 정당은 후보자 소속 정당이 주요정당인 후보자와 군소정당 및 무소속을 분류함. 대통령소속정당은 후보자의 정당이 대통령 소속정당과 동일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으로 구분하였음. 성별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였고, 학력은 4년제 대졸이상과 전문대 및 고등학교 졸업이하로 구분함. 연령은 후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음. 현직여부는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음. 종속변수는 당선과 탈락으로 구분하였음(<표 8> 참조).

<표 8> 측정변수

구분	변수	측정 지표	비고
독립변수	성별	1. 여성 0. 남성	더미변수
	연령	나이	연속형변수
	학력	1. 4년제 대졸이상 0. 고졸이하	더미변수
	주요정당공천	1. 주요정당 0. 군소정당/무소속	더미변수
	대통령 소속정당	1. 대통령 소속 정당 0. 그 외 정당	더미변수
	현직 국회의원	1. 현직 국회의원 0. 현직 국회의원이 아님	더미변수
종속변수	당선여부	1. 당선 0. 탈락	더미변수

- 분석대상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 여성은 9.6%, 남성 90.4%임. 연령으로는 50대 38.0%, 40대 36.1%로 40~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 16.6%, 30대 8.5%, 20대 0.8%임. 학력은 4년제 대졸자 이상이 87.1%이고, 대졸미만은 12.9%임. 소속정당은 주요정당이 64.4%이고 군소정당 및 무소속이 35.6%임. 소속정당이 대통령소속정당은 24.9%이고, 그 외 정당은 75.1%임. 후보자중에서 현역국회의원은 18.9%이고, 그렇지않은 후보자는 81.1%임. 분석대상이 되는 1012명 중에서 총 당선자수는 253명인 25.0%임(<표 9> 참조).

<표 9> 후보자 특성(빈도수)

변수	측정항목	인원	구성비	변수	측정항목	인원	구성비
성별	남성	915	(90.4)	주요정당 소속	주요정당	652	(64.4)
	여성	97	(9.6)		군소정당, 무소속	360	(35.6)
연령	20대	8	(0.8)	대통령 소속정당	대통령소속정당	252	(24.9)
	30대	86	(8.5)		그 외 정당	760	(75.1)
	40대	365	(36.1)	현역 국회의원	현역국회의원	191	(18.9)
	50대	385	(38.0)		현역의원 아님	821	(81.1)
	60대이상	168	(16.6)	당선여부	당선	253	(25.0)
학력	대졸이상	881	(87.1)		탈락	759	(75.0)
	대졸미만	131	(12.9)	합계		1012	100.0

- 경기도 지역구 후보자의 당락 영향요인을 분석한 <표 10>에 의하면, 성별은 당선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며 연령, 주요정당소속, 대통령소속정당, 현역국회의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 지역구 출마 여성과 남성의 당선경쟁력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음.
 - 당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주요정당소속(B=3.069, p<001)이며, 현역국회의원(B=1.493, (p<001), 대통령소속정당(B=.911, p<001)이 당선에 정(+의 영향을 주는 변수임. 변수 중에서 연령(B=-.024, p<050)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요 정당에 속한 경우,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대통령 소속정당에 속한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본 분석결과 중에서 성별이 당락의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라는 결과는 황아란(2002), 권수현·황아란(2017)의 당선경쟁력 분석 결과와 일치함.

<표 10> 경기도 지역구 후보자 당락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16대-20대 후보자)

구분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교차비 (Exp(B))
성별(여성)	.010	.332	.001	1	.975	1.011
연령	-.024	.011	4.695	1	.030	.976
학력	.621	.422	2.166	1	.141	1.861
주요정당소속	3.069	.474	41.836	1	.000	21.515
대통령소속정당	.911	.177	26.539	1	.000	2.487
현역국회의원	1.493	.198	56.982	1	.000	4.452
상수항	-3.696	.794	21.648	1	.000	.025
N	1021					

나.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여성할당 기준

“선거법에 지역구 여성 30% 할당 권고조항이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 소속 정당 중에서 이러한 조항을 당헌 및 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은 소수임”

- 제도적인 행위자로서 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각 정당의 여성할당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단 여전히 정당 개편 및 창당이 마무리 되지 않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21대 총선을 치루게 될 정당의 수와 분석에서 다른 정당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현역 국회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9개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우리공화당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당헌 및 당규를 검색해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 조항을 조사·분석하였음.
- 조사결과 여성할당 30% 이상을 명시한 정당은 3개 정당이며, 여성에 대한 가점부여를 명시한 정당은 1개 정당, 우선추천지역으로 여성을 추천하는 정당은 1개로 조사되었음. 공직

선거법에서 30% 여성할당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당의 당헌 및 당규는 공직선거법의 권고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표 11> 참조).

<표 11> 정당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할당 규정

정당명	당헌 및 당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조(성평등 실현)에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특별당규「21대 후보자선출규정」 제17조(가산기준)에 ‘ ①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고 규정함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서 관련내용 검색하지 못함
민생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당헌」 제7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에 ‘ ①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고 규정함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32조(가감점 부여) ①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제11조(포상과 징계), 제7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의 보장)에 따라 공천 신청자 중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 신인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 부여의 범위는 공천 심의 평가 및 경선 결과를 합한 최종 점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정의당	「선거관리규정」 제24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별, 광역의원 선거별, 기초의원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 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홈페이지가 없어서 검색하지 못함
우리공화당	제86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민중당	「선거관리 규정」 제8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50%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9.29>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당헌 및 당규 검색일 2020년 2월 28일 기준

주1: 국회의원 소속 정당은 모두 9개 정당이며, '민생당'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된 것으로 검색됨.

주2: 정당은 현직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함

4. 시사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기회는 좀 더 다양화 될 것임.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함”

가. 요약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할당 50% 규정이 제도화 되어서 20대 총선 기준 여성의원이 53.2%인 반면, 국회의원 의석의 84.3%를 구성하는 지역구 의원의 여성비율은 10.3%에 머무르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대 총선 기준 60개 지역구에서 총 7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여성이 11.7%를 구성하고 있음. 16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한명도 없었으며 17대 4명, 18대 4명, 19대 5명, 20대 7명이 당선됨.
- 전국 및 경기도 모두 여성후보자가 많아지면 여성당선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의무 할당제가 실시되면서 지역구를 통한 여성대표성 확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그렇지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 지방의원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여성후보자와 당선자 수를 증가하도록 하였음.
 - 그렇지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기도 지역구 선거에서 주요정당은 여성후보자를 10% 내외 수준에서 추천하였음. 경기지역 20대 총선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13.3%로 공직선거법 여성할당 30% 권고조항을 이행하는 정당은 많지 않으며, 일부 소수정당만이 여성 30%이상을 공천하였음.
-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정수는 20대 총선과 동일한 300석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준연동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준연동형’ 방식은 기존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던 방식에 변화를 주어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을 제외한 의석수의 절반(50%)에

대해 연동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나머지 50%는 다시 병립형으로 기존의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임.

- ‘준연동형’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1, 2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감소하고, 지역구 의석이 적거나 없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여성 의원 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없지만,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 정당’ 과 같은 소수정당의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여성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 지역구 여성할당을 요구하였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에 여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음. 비례대표의 경우 20대 총선과 의석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의원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움.
 - 그렇지만 소수정당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여성주의 정당’의 창당을 통한 진출, 진보적 소수정당의 진출에 따른 여성 진출 확대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음.
-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한적인 여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입후보자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의 경쟁력이 남성에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여성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6대-20대 총선에 출마한 경기지역 입후보자 1,0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입후보자의 당락에 성별이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인지를 분석한 결과 성별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즉, 여성의 당선경쟁력은 남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직선거법에 권고하는 여성할당 30%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렇지만 각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헌·당규에서 여성할당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시사점

- 2019년 패스트트랙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개정된 ‘준연동형’ 방식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정치

적 요구에 민감한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18세 선거 연령의 확대로 정치적 대표성이 낮았던 청년, 청소년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정당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여성주의 정당', 소수 진보정당의 진출에 도움이 되어 진보적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현실화 하고 있어 정치적 이슈의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거대 정당의 비례의석수 감소로 진보적 여성운동권의 정치 진출 기회의 장이 되었던 주요정당의 비례대표를 통한 정치권 진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함.

○ 그렇지만 전체 300석 중에서 15.7%에 불과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만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지역구 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주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여성할당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경기도 및 시군의회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각 정당은 국회의 여성대표성 증가를 위해 지방의회 여성할당을 통한 여성 정치적 대표성 증가 효과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여성의무 할당 제도의 도입과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은 여성의 의회 진입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회 후보자 여성할당으로 여성의 진입이 확대되었고, 비례대표 및 여성할당을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정치적 경험을 쌓아 재선 및 삼선에 도전하도록 하거나 기초의회 출신 의원이 광역의원으로서 다시 진출하는 성과를 낳으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22.5%, 31개 시군의회 39.5%로 여성 대표성이 증가하였음.
- 또한 경기도 시군의회 중 9개 지역의 의장이 여성이라는 점도 여성의 양적증가가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대표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30%, 나아가 남녀동수 추천 제도를 정당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21대 총선에서 경기도의 유권자들은 정당의 투표 기준으로 각 정당의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꼼꼼히 비교할 뿐 아니라 여성대표성 확대와 남녀동수 정당 운영 노력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정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